

모금과 구호

〈1993〉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본협의회 회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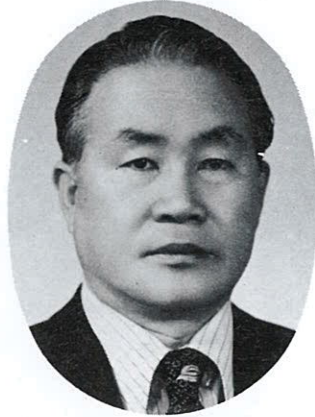
각계 대표로 구성된 본협의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해이재민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과 이재민구호에 대한 예산을 심의 확정하였다.



역 대 회 장



초 대 회 장
俞 鎮 午
(前) 再建國民運動中央會 會長



2 대 및 6 대 회 장
柳 達 永
서울 大學 校 名譽 教授



3 대 회 장
李 寬 求
세 宗 大 學 記 念 會 社 會 長



5 대 회 장
高 在 旭
(前) 東 亞 日 報 社 會 長



7 대 회 장
柳 建 浩
(前) 朝 鮮 日 報 社 代 表 理 事

4 대 회 장
林 炳 稷
초 대 外 務 部 장 관

설립 목적 및 연혁

1. 目 的

不 時 로 發 生 하 는 災 害 의 復 舊 와 이 재 민 구 호 를 위 하 여 國 民 義 捐 金 品 의 募 集 과 관 리 및 配 分 을 통 하 여 隣 保 相 助 의 동 포 애 를 바 탕 으 로 福 祉 社 會 의 기 틀 을 마 련 코 저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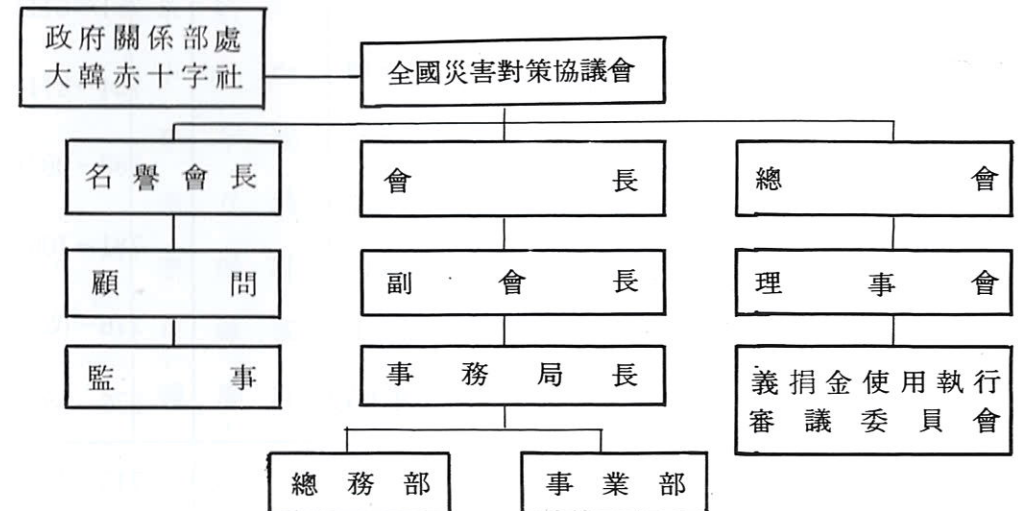
2. 沿 革

- (1) 1961년 7월 13일 全國水害對策委員會 組織
- (2) 1961년 10월 26일 全國災害對策委員會 創立總會
- (3) 1964년 9월 3일 保健社會部에 社會團體 登錄
- (4) 1964년 10월 31일 全國災害對策協議會로 改稱
- (5) 1968년 10월 15일 社團法人으로 改編

3. 事 業

- (1) 災 害 復 舊 및 救 護 를 위 한 國 民 義 捐 金 品 募 集 事 業
- (2) 前 號 事 業 에 대 한 企 劃, 統 制, 調 查 研 究 및 弘 報 事 業
- (3) 災 害 이 재 민 救 護 事 業
- (4) 其 他 本 會 의 目 的 을 達 成 하 기 위 한 事 業

4. 機 構 表



會員名單(가나다順)

職位	姓名	所屬機關	電話
名譽會長	柳 達 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786-1754
顧問	黃 溫 順	徽慶學園 理事長	244-2304
會長	柳 建 浩	(前)朝鮮日報社 代表理事	542-5503
副會長	崔 鐘 律	京鄉新聞社 社長	730-5151
"	李 鍾 旻	大田文化放送 社長	(042) 254-9680
理事	金 璟 梧	韓國女性團體協議會 會長	793-5196
"	盧 永 台	韓國放送協會 常任理事兼事務處長	735-7117
"	朴 淑 鉉	韓國社會福祉協議會 會長	712-1655
"	孫 宣 奎	韓國新聞協會 事務局長	733-2251
"	李 柄 雄	大韓赤十字社 事務總長	755-9301
"	李 尚 根	韓國新聞編輯人協會 事務局長	732-1726
"	李 弼 坤	中央日報社 社長	751-5114
"	張 在 國	한국일보社 社長	724-2114
"	崔 鍾 賢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780-0821
"	洪 斗 杓	韓國放送公社 社長	781-1000
監事	張 大 煥	每日經濟新聞社 社長	276-0201
"	河 龍 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事務總長	576-5892
常任理事	金 圭 炫	全國災害對策協議會 事務局長	715-4139

職位	姓名	所屬機關	電話
會員	姜 大 棒	全國劇場聯合會 會長	735-3382
"	姜 汶 奎	大韓YMCA聯盟 事務總長	752-1953
"	姜 成 求	(株)文化放送 社長	784-2000
"	金 大 泳	大韓住宅公社 社長	513-3114
"	金 炳 珪	東亞日報社 會長	361-0114
"	金 相 廈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316-3502
"	金 淑 喜	大韓YWCA聯合會 會長	774-9702
"	金 容 完	大韓家族計劃協會 會長	634-8211
"	金 雲 龍	大韓體育會 會長	420-3333
"	金 鐘 星	韓國製粉工業協會 會長	753-1659
"	金 炯 駟	大韓穀物協會 會長	583-2111
"	朴 文 熙	한국걸스카우트연맹 總裁	733-4347
"	朴 尚 奎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785-0010
"	朴 龍 學	韓國貿易協會 會長	551-5114
"	徐 義 玄	大韓佛教曹溪宗總務院 院長	739-5590
"	承 炳 九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事務總長	782-1867
"	申 榮 均	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 會長	744-7872
"	李 罕 洙	서울신문社 社長	735-7711
"	李 方 鎬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730-6211
"	李 相 雄	서울특별시 醫師會 會長	676-9751
"	車 鍾 泰	山林組合中央會 會長	416-9416
"	韓 灝 鮮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397-5114

년도별 재해 피해 현황

연도별	이재민	인 명 피 해 (명)			가 옥 피 해 (동)			
		총 수	사망·실종	부 상	총 수	유실·전파	반 파	침 수
1961	218,715	252	252	—	19,244	1,299	7,889	10,056
1962	40,240	719	568	151	7,792	2,424	1,908	3,460
1963	131,645	819	497	322	28,911	5,503	6,660	16,748
1964	132,999	1,605	765	840	27,016	3,897	5,358	17,761
1965	306,910	643	365	278	60,804	17,075	10,953	32,776
1966	194,037	575	315	260	39,918	5,071	5,804	29,043
1967	890,858	446	238	208	5,856	2,022	1,216	2,618
1968	656,793	833	484	349	15,155	3,509	2,458	9,188
1969	477,799	1,548	938	610	48,926	12,878	13,251	22,797
1970	255,372	1,255	606	649	36,420	7,549	6,220	22,651
1971	111,645	526	333	193	7,905	3,210	2,266	2,429
1972	807,523	1,607	822	785	115,273	11,374	53,996	49,903
1973	14,649	392	271	121	2,418	990	462	966
1974	41,544	476	320	156	7,399	1,265	1,650	4,484
1975	29,844	202	162	40	1,805	589	607	609
1976	15,178	601	542	59	2,272	912	413	947
1977	79,693	2,194	459	1,735	17,154	2,261	1,851	13,042
1978	28,860	302	201	101	4,019	2,287	918	814
1979	38,398	554	434	120	13,733	2,867	2,321	8,545
1980	176,317	1,597	447	1,150	13,180	5,061	2,492	5,627
1981	169,020	442	350	92	29,959	3,328	2,117	24,514
1982	61,028	279	215	64	2,117	388	263	1,466
1983	5,783	242	153	89	1,375	420	940	15
1984	514,848	629	364	265	53,631	1,722	1,923	49,986
1985	66,722	380	332	48	3,058	709	1,089	1,260
1986	102,952	162	71	91	2,598	1,072	890	636
1987	237,860	857	857	—	64,762	5,295	6,118	53,349
1988	6,326	50	50	—	5,346	256	253	4,837
1989	91,092	271	271	—	22,021	2,858	516	18,647
1990	234,715	206	206	—	74,622	2,218	1,856	70,548
1991	30,385	186	186	—	18,861	9,608	1,244	8,009
1992	965	20	18	2	3,319	49	38	3,232
합계	6,170,715	20,870	12,092	8,778	756,869	119,966	145,940	490,963

년도별 재해모금 및 구호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모금및이자수입액	구 호 비			
		주 택 복 구 비	긴급및장기구호비	기 타	합 계
1961	42,741	25,422	11,145	247	36,814
1962	59,597	19,355	17,984	8,403	45,742
1963	62,242	47,338	20,740	10,540	78,618
1964	55,814	35,089	8,596	9,772	53,457
1965	40,459	19,329	15,849	150	35,328
1966	25,653	26,395	4,716		31,111
1967	88,039		12,443	40,967	53,410
1968	227,554	10,000	14,787	210,180	234,967
1969	111,900	48,000	27,582	29,549	105,131
1970	301,956	77,113	180,990	40,254	298,357
1971	161,122	80,790	50,144	18,263	149,197
1972	656,189	373,334	234,028	9,488	616,850
1973	189,685	3,687	25,983	24,401	54,071
1974	514,548	478,038	4,901	1,676	484,615
1975	42,412	6,336		4,855	11,191
1976	487,553	271,557	41,880	247,706	561,143
1977	2,396,900	1,350,575	546,872	122,426	2,019,873
1978	133,532	174,370	63,218	8,098	245,686
1979	4,947,802	1,992,250	176,917	115,710	2,284,877
1980	6,309,343	2,227,180	1,230,308	1,266,222	4,723,710
1981	6,079,381	1,335,988	2,881,824	9,952	4,227,764
1982	1,269,872	353,066	1,616,235	250,579	2,219,880
1983	785,347	319,024	34,274		353,298
1984	17,127,739	957,410	16,253,105	30,806	17,241,321
1985	1,186,653	491,936	1,584,736	201,497	2,278,169
1986	349,213	634,528	2,189,866	200,545	3,024,939
1987	33,074,848	4,735,507	25,522,508	194,412	30,452,427
1988	1,823,642	479,872	1,752,967	102,556	2,335,395
1989	19,116,930	1,988,244	13,270,988	223,814	15,483,046
1990	45,558,203	2,149,809	30,858,882	814,704	33,823,395
1991	28,673,760	1,255,771	16,250,934	134,313	17,641,018
1992	4,369,916	46,400	2,543,811	200,000	2,790,211
합계	176,270,545	22,013,713	117,449,213	4,532,085	143,995,011

의연품 총 접수내역

(1961 - 1992)

품 명	단위	단 가	총 수 량	환가액(천원)
의 류	점	5,000원	6,616,576	33,082,880
침 구 류	장	20,000원	138,461	2,769,220
양 곡 류	키로	1,200원	401,971	482,365
라 면	상자	5,000원	62,512	312,560
신 발 류	켈레	20,000원	99,614	1,992,280
식 기 류	점	3,000원	124,472	373,416
생 필 품	점	3,000원	830,696	2,492,088
약 품	점	3,000원	1,317,183	3,951,549
학 용 품	점	1,000원	1,854,390	1,854,390
건 축 자 재	점	5,000원	749,392	3,746,690
버 너	대	15,000원	13,429	201,435
세 제 류	점	1,000원	83,460	83,460
식 품 류	점	1,000원	322,476	322,476
기 타	점	5,000원	1,794,166	8,970,830
합 계	점		14,408,798	60,635,639

최근6년간 재해의연금모집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 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수 입	합 계	35,258,576	6,629,791	23,411,326	53,486,483	48,336,848	35,065,746
	전년도이월금	2,183,728	4,806,149	4,294,396	7,928,280	19,663,088	30,695,831
	모금수입	32,882,045	137,416	18,609,867	41,466,701	25,556,667	30
	이자수입	120,307	351,825	340,009	874,302	1,810,872	3,188,206
	집행잔액반환금	72,496	1,334,401	167,054	3,217,200	1,306,221	1,181,679
지 출	합 계	30,452,427	2,335,395	15,483,046	33,823,395	17,641,017	2,790,211
	장의·위로금	2,372,690	139,720	768,060	618,000	576,000	20,000
	장기구호비	5,511,266	232,297	3,444,628	2,347,962	1,644,738	369,321
	생계보조비	63,250	2,000	57,500	26,750	22,000	
	주택복구비	4,612,248	479,012	1,839,580	1,973,844	1,202,411	46,400
	세입주보조비	123,259	860	148,664	175,965	53,360	
	침수주택수리비	9,720,000	430,500	3,792,400	14,309,600	8,295,800	771,300
	농어가특별보조비	5,997,616	948,450	5,208,400	2,854,370		
	미귀가세대위로금				502,200	1,890,000	
	이재민특별위로금				10,200,000		
	월동대책비					1,761,200	
	무상양곡					2,061,196	1,383,190
	긴급생필품구입비	1,857,686	100,000		475,781	97,426	200,000
기 타	194,412	2,556	223,814	338,923	36,886		
잔 액	4,806,149	4,294,396	7,928,280	19,663,088	30,695,831	32,275,535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중앙재해대책본부 제정) 요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풍수해대책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 방재책임자 등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재해비용부담율과 부담액을 정함으로써, 재해복구사업을 원활히 실시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유족위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 (장의비 포함) 을 지급한다.

제9조 (이재민구호)

① 재해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근거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재민구호를 실시한다.

1. 가옥의 전파, 유실 또는 반파피해를 입은자
2. 5톤미만 선박의 전파, 유실 또는 반파피해를 입은자
3. 1헥타미만 경작자로서 80% 이상의 농작물피해를 입은자
4. 어망, 수산증·양식시설 및 생물이 80% 이상 피해를 입은자
5. 축사, 초지, 양잠등이 80% 이상 피해를 입은자
6. 본부회의에서 이재민구호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이재민구호대상자중 별표에서 정한 장기구호기간(1-3개월) 종료후에도 생계가 극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안에서 구호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구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생계보조)

① 재해로 인하여 그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그 유가족에게 생계보조를 할 수 있다.

② 재해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세농·어가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최고 10가마 범위안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무상양곡을 지원할 수 있다.

1. 1.5헥타 미만 경작자로서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2. 5톤미만 선박, 소규모 수산증·양식시설 및 5헥타미만 제3종 공동어업 (어망)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어가

제11조 (주택복구)

①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또는 유실되었거나 홍수범람등으로 침수되었을 경우에 건물주에게 복구비 또는 수리비를 지원하고 전파건물의 월세 및 전세 입주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실제월세 및 전세계약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건물주가 전파 및 반파주택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증금중 의연금만을 지원하며, 주택복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93년도 구호비지원기준

(중앙재해대책본부 제정)

구분	종별	단위	지원액	재원 및 부담율
사망·실종자	위로금	구	4,000천원	의연금 100%(장의비 포함)
장기구호비	1-3개월	1인/1일	1,321원	국고 70% 의연금 30%
생계보조비	1급	세대	3,000천원	국고 50% 의연금 50% (가구의 주수입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유가족)
	2급		2,500천원	
	3급		2,000천원	
침주주택보조비	일부침수	세대	300천원	의연금 100%(주된 주거용방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 사용할수 없는 경우)
	완전침수	세대	500천원	의연금 100%(출입문 윗부분까지 침수된 경우)
주택복구비	전파주택	15평형	동	국고및지방비(12%) 1,440천원
				의연금(8%) 960천원
	장기저리용자(70%) 8,400천원			
자부담(10%) 1,200천원				
반파주택 (개축 희망시 전파 기준으로 지급)	10평형	동	4,000천원	국고및지방비(12%) 960천원
				의연금(8%) 640천원
장기저리용자(70%) 5,600천원				
자부담(10%) 800천원				
세입주보조비	월세 및 전세금	세대	2,000천원범위 내에서 실제약금	국고 50% 의연금 50%
	아파트 입주보조	세대	입주보증금 및 6개월 임대료	국고및지방비 50% 의연금 50%
피해농어가 생계보조비	50-80% 미만 피해	세대	양곡 5가마	국고 70% 의연금 30%
	80-100% 피해	세대	양곡 10가마	국고 70% 의연금 30%

재해구호지침(보건사회부 제정)요강

1. 목 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구호와 피해시설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도모

2. 방 침

- 가. 신속한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 나. 재해구호 비축물자 등 관리철저
- 다. 방역및 전염병 예방철저

6.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배분

가. 의연금품의 모집

- (1) 대규모의 재해발생시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연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2) 의연금품의 모집은 중앙일원화의 원칙에 의하여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한다.
- (3) 시·도지사는 각시 도, 시·군·구에 의연금품이 기탁될 때에는 즉시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나. 의연금품의 관리 및 배분

- (1) 모집된 의연금품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관리배분한다.
- (2) 의연금품을 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정도, 이재민 발생상황에 따라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사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분한다.

다. 초과보유 의연금의 특별사용

- (1) 보건사회부장관은 재해지역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의연금 관리 운영규정 (보건사회부훈령 제628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의연금 사용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에 의거 그 초과금액의 범위안에서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과 협의 이재민의 구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

(2) 특별사용 기준

- (가)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50만원 이내의 명절 특별위로금
- (나)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시 세대당 1일 2,000원 이내의 연료비
- (다)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의 경우는 세대당 120만원 이내, 반파의 경우는 세대당 60만원 이내의 주거비 보조
- (라)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30만원 이내의 월동대책비

의연금 관리 운용규정

(보건사회부훈령 제628호)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의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모집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의 모집 및 관리·운용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3 조(의연금운용 계획)

- ①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매회 회계년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의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의연금 운용계획에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등 기타 의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 부(의연금 모집결과 보고) 협의회장은 의연금모집기간이 만료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모금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 조(의연금 사용)

- ① 의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 1. 재해이재민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 2.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 3. 모금경비 및 협의회 운영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 조(초과보유 의연금의 특별사항)

-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재해지역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의연금 사용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그 초과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이재민의 구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
 - 1.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50만원이내의 명절 특별위로금(설날, 추석,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로 서 재해발생후 처음 맞게 되는 날에 한 한다.)
 - 2.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시 세대당 1일 2,000원 이내의 연료비
 - 3.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의 경우는 세대당 120만원이내, 반파의 경우는 세대당 60만원이내의 주거비 보조
 - 4.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30만원이내의 월동대책비
-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그 사용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재해기간중 사용한 의연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92. 9 해일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고, 시가지가 물에 잠겨 큰피해를 가져왔다. (목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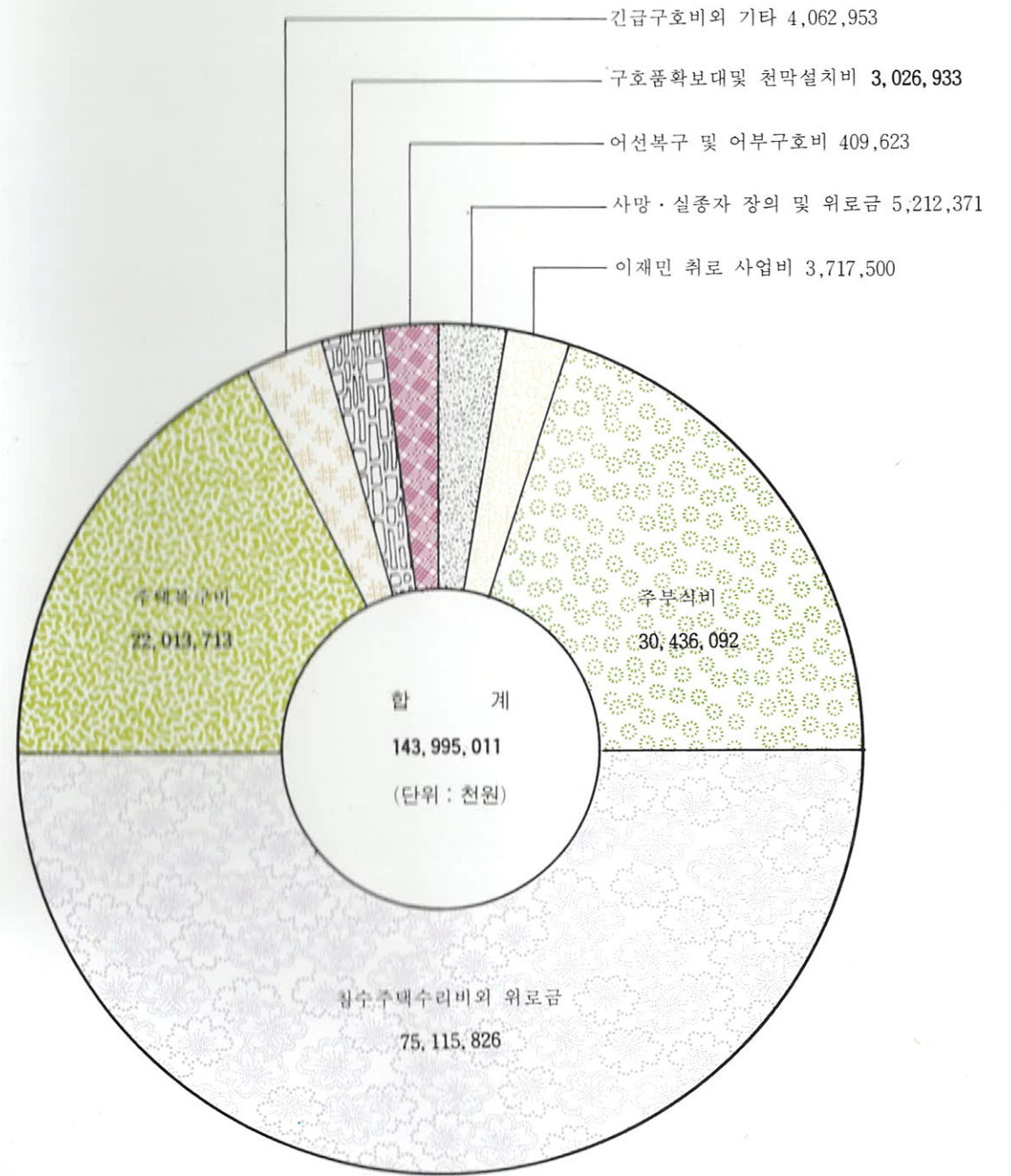
92년 봄부터 가을기 시작한 극심한 한해로 벼포기가 마르고 식수마저 고갈되는등 영호남 지방에 큰피해를 가져왔으며, 지하수개발 및 관정을 이용하여 한해 극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각계각층으로부터 기탁되어온 국민의 정성어린 성품은 신속하게 재해지구에 배정하여 이재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도표로 본 재해구호현황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1-1

TEL. (715) 4139 · 6461

FAX. (715) 4429